

서울특별시 강남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953
----------	-----

2019년 8월 29일  
환경수자원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8월 7일, 서울특별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9년 8월 13일  
다. 상정일자 : 제289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19년 8월 29일 상정·원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 설명자: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 가. 제안이유

- 강남자원회수시설은 「폐기물시설축진법<sup>1)</sup>」 제30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로 2020년 3월 31일로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임.

자원회수시설 운영·관리 능력이 풍부한 전문 법인으로 하여금 강남자원 회수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위탁운영사업자를 공개 선정 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1) 폐기물시설축진법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축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약칭.

## 나. 주요 내용

1) 위탁사무명 : 강남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운영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폐기물시설축진법」 제30조제2항(권한·업무의 위임·위탁)
- 「폐기물시설축진법 시행령」 제35조제3항(권한·업무의 위임 등)
-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축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 필요성

- 강남자원회수시설은 서울시 발생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중요한 시설으로써 높은 수준의 전문 기술력과 노하우를 필요로 하며,
- 폐기물을 안전하게 반입·처리하고 운영 효율성의 극대화를 위해 관리·운영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전문 기관에게 위탁 운영 필요

3) 위탁사무 내용

-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반입 및 처리
- 소각, 환경설비 등 관련 시설의 운전 및 유지·보수
- 고압증기 생산 및 판매
- 자원회수시설의 부대시설 유지관리
-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필요한 정비, 용역, 물품 등 계약·관리 및 일반사무 처리
- 기타 자원회수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업무 등

4) 시설개요

- 시설명 : 강남자원회수시설
-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318(일원동)

- 부지면적 : 63,818 $m^2$
- 시설규모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900톤/일(300톤/일 × 3기)
- 처리권역 : 8개 자치구(강남,성동,광진,동작,관악,서초,송파,강동)
- 주 용 도 :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 및 소각열 회수하여 자원화
- 주요장비 : 소각설비, 재처리설비, 환경오염 방지시설 등

5) 위탁기간 : 3년('20.4.1. ~ '23.3.31.)

※ 그간 민간위탁 추진현황

- 1차 : '01.12.28.~'04.12.27. (3년, SK건설)
- 2차 : '04.12.28.~'07.12.27. (3년, 한국시거스-주, 현대모비스)
- 3차 : '08.01.01.~'10.12.31. (3년, 한국시거스주, 한라산업개발-주)
- 4차 : '11.01.01.~'13.12.31. (3년, 한국시거스-주)
- 5차 : '14.01.01.~'17.03.31. (3년, 한국시거스-주)
- 6차 : '17.04.01.~'20.03.31. (3년, 한라산업개발-주)

6)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후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7) 소요예산(예산) : 5,033백만원/년

○ 산출근거 : 4,793,412,000원('19년 위탁비) x 1.05(임금상승률)

※ 임금상승률 : 최근 3년 해당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 상승률

8) 기대효과

- 민간위탁에 따른 인력 및 예산절감 효과
- 전문적인 시설 운영·관리에 따른 서비스 품질 향상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시설추진법」 제30조제2항

제30조(권한·업무의 위임·위탁)

- ②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그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폐기물시설축진법 시행령」 제35조제3항

제35조(권한·업무의 위임 등)

- ③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출자한 법인 2.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3.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해당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전문개정 2009. 6. 16.]

○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축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영 제35조제3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원회수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3. 자원회수시설을 설계·시공한 자, 자원회수시설 위탁 운영 실적이 있는 국내외업자, 자원회수시설을 설계·시공 또는 운영한 실적이 있는 외국 업체와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 국내업자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2.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나.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없음

## 4.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 재 효)

### 가. 개요

-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강남자원회수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위탁운영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 나. 검토의견

#### 1) 자원회수시설 운영 현황

- 서울시는 생활쓰레기의 안정적 처리와 소각열 회수를 통한 대체 에너지 활용을 목적으로 강남 등 4개소에 자원회수시설<sup>2)</sup>을 설치하여 자치구 간 공동이용하고 있으며, 시설의 운영·관리는 3년 단위로 사업자를 선정하여 위탁관리하고 있음.

####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현황〉

시설명	규모 (톤/일)	사업비 (억원)	공동이용 자치구	최 초 위탁일	민간위탁사업자 (현 회차, 기간)
양 천	400	318	양천, 강서, 영등포	'96.3.1	한국시거스(주) (8회차, '17.4.1~'20.3.31)
마 포	750	1,665	마포, 중구, 종로 용산, 서대문구	'06.6.1	삼중환경기술(주) 환경시설관리(주) (5회차, '18.6.1~'21.5.31)
노 원	800	742	노원,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동대문	'97.1.16	(주)우주엔비텍 (8회차, '18.2.1~'21.1.31)
강 남	900	1,011	강남, 성동, 광진, 동작 서초, 송파, 강동, 관악	'01.12.28	한라산업개발(주) (6회차, '17.4.1~'20.3.31)

※ 구로(광명자원회수시설 이용), 은평(소규모 자체 시설 이용)

2) 자원회수시설은 폐기물을 850℃ 이상 1,100℃의 고온으로 연소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폐열(400℃ 이상)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한 후 120℃ 정도로 낮아진 고압증기를 주변의 지역난방으로 공급하는 등 대체에너지로 활용하게 하는 시설

- 본 민간위탁 동의안 대상 시설인 강남자원회수시설<sup>3)</sup>은 900톤/일(300톤/일 × 3기) 규모로 강남·성동·광진·동작·관악·서초·송파·강동 등 8개 자치구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소각 처리하고 소각열을 회수하고 있으며, 2001년 12월 28일 최초 민간위탁 이후 6회에 걸쳐 위탁관리 중에 있고 현재 한라산업개발(주)에서 위탁관리 중에 있음.

## 2)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운영의 타당성

- 강남자원회수시설을 포함한 4개 자원회수시설은 구조가 복잡하고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필요로 하는 만큼 현행과 같이 외부 전문기관이 위탁관리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수탁자 선정 및 소요예산<sup>4)</sup> 산출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3) 위탁관리 개선방안 마련

- 현재 100톤 이상의 규모가 큰 자원회수시설을 위탁관리 할 수 있는 업체 수는 전국적으로 19개 업체에 불과하고 지역적 영업 특성 등에 따라 서울시 4개 자원회수시설 위탁관리가 특정 업체에 한정되고 있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지만, 최근 들어 시장 환경변화에 기인하여 보다 많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고 있고 실제 신규업체<sup>5)</sup>가 진입, 선정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금년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보면, 2016년 민간위탁 종합

3)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318(일원동)

4) 5,033백만원/년 = 4,793백만원 × 1.05(임금상승률)

5) '18년 이후 선정된 수탁업체의 경우 기존 업체 외에 삼중환경기술(주), 환경시설관리(주), (주)우주엔비텍 등 신규 업체가 선정되고 있음.

성과평가 개선요청 사항 중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적<sup>6)</sup>이 부재한 것으로 제시되어 있고 예산편성 대비 정산비 초과집행 발생, 퇴사에 따른 전문인력 유출, 비정규 인력의 정규직 전환 등에 대해 개선요청을 하고 있는 바, 다각적인 검토를 통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임.

또한, 일부 자원회수시설의 경우 위탁 기간 중 임금인상 및 처우개선 요구 등의 사유로 파업이 발생했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바, 근로자측 요구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근로여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을 통해 자원회수시설 가동 중단에 따른 시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처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임.

---

6) '19년 6월 기준 운영인력은 총 74명으로 이중 정규직 51명, 비정규직 23명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강남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953
----------	-----

제출년월일 : 2019년 8월 7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1. 제안이유

- 가. 강남자원회수시설은 「폐기물시설축진법<sup>1)</sup>」 제30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로 2020. 3. 31.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임.
- 나. 자원회수시설 운영·관리 능력이 풍부한 전문 법인으로 하여금 강남자원회수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위탁운영 사업자를 공개 선정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강남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 추진근거

- 「폐기물시설축진법」 제30조제2항(권한·업무의 위임·위탁)
- 「폐기물시설축진법 시행령」 제35조제3항(권한·업무의 위임 등)
-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축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1) 폐기물시설축진법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축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약칭.

## ○ 필요성

- 강남자원회수시설은 서울시 발생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중요한 시설으로써 높은 수준의 전문 기술력과 노하우를 필요로 하며,
- 폐기물을 안전하게 반입·처리하고 운영 효율성의 극대화를 위해 관리·운영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전문 기관에게 위탁 운영 필요

## 다. 위탁사무 내용

-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반입 및 처리
- 소각, 환경설비 등 관련 시설의 운전 및 유지·보수
- 고압증기 생산 및 판매
- 자원회수시설의 부대시설 유지관리
-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필요한 정비, 용역, 물품 등 계약·관리 및 일반사무처리
- 기타 자원회수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업무 등

## 라. 시설개요

- 시설명 : 강남자원회수시설
-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318(일원동)
- 부지면적 : 63,818 $m^2$
- 시설규모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900톤/일(300톤/일 × 3기)
- 처리권역 : 8개 자치구(강남,성동,광진,동작,관악,서초,송파,강동)
- 주 용 도 :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 및 소각열 회수하여 자원화
- 주요장비 : 소각설비, 재처리설비, 환경오염 방지시설 등

마. 위탁기간 : 3년('20.4.1. ~ '23.3.31.)

※ 그간 민간위탁 추진현황

- 1차 : '01.12.28.~'04.12.27. (3년, SK건설)
- 2차 : '04.12.28.~'07.12.27. (3년, 한국시거스-주, 현대모비스)
- 3차 : '08.01.01.~'10.12.31. (3년, 한국시거스-주, 한라산업개발-주)
- 4차 : '11.01.01.~'13.12.31. (3년, 한국시거스-주)
- 5차 : '14.01.01.~'17.03.31. (3년, 한국시거스-주)
- 6차 : '17.04.01.~'20.03.31. (3년, 한라산업개발-주)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후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사. 소요예산(예산) : 5,033백만원/년

- 산출근거 : 4,793,412,000원('19년 위탁비) x 1.05(임금상승률)

※ 임금상승률 : 최근 3년 해당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 상승률

아. 기대효과

- 민간위탁에 따른 인력 및 예산절감 효과
- 전문적인 시설 운영·관리에 따른 서비스 품질 향상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시설축진법」 제30조제2항

제30조(권한·업무의 위임·위탁)

- ②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그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폐기물시설축진법 시행령」 제35조제3항

제35조(권한·업무의 위임 등)

- ③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출자한 법인 2.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3.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해당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전문개정 2009. 6. 16.]

○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영 제35조제3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원회수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3. 자원회수시설을 설계·시공한 자, 자원회수시설 위탁 운영 실적이 있는 국내외업자, 자원회수시설을 설계·시공 또는 운영한 실적이 있는 외국 업체와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 국내업자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나.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없음